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추가 보호조치

구 분			세 부 조 치 사 항
14 공 공 기 관 보 안 요 구 사 항	14.1. 관리적 보 호조치	14.1.1. 보안서비 스 수준 협 약	공공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이 반영된 보안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4.1.2. 도입 전산 장비 안전 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보안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56조에 규정된 전자문서의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품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1.3. 보안관리 수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 장소 및 망은 공공기관 내부 정보 시스템 운영 보안 수준에 준하여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
		14.1.4. 사고 및 장 애 대응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공공기관의 사고·장애 대응 절차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사고·장애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2. 물리적 보 호조치	14.2.1. 물리적 위 치 및 분리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공공기관용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물리자원(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일반 이용자용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영역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4.2.2. 중요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 구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장비를 이중화하고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4.3. 기술적 보 호조치	14.3.1. 검증필 암 호화 기술 제공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중요자료를 암호화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검증필 국가표준암호화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14.3.2. 보안관제 제반환경 지원	공공기관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관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